

휘발유 자연감모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건의

~대한석유협회~

1.

현재 정유업계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구조에 기인한 총체적 경쟁력 저하와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경제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요인은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는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즉, 한계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투자는 자제하며, 제반 경비의 절감 및 인력의 축소·재배치 등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저공해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을 위한 첨단 설비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문제의 해결에 전력하는 국가기지책에 부응하고자 환경보전을 위한 필수시설인 공해 방지시설에 대하여도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유류에 대한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징수·납부 제도를 살펴보면,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휘발유 자연감모분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납부기한과 회수기한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 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업계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휘발유 자연감모분의 세액공제와 교통세, 특별소비세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을 별첨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발유 자연감모분에 대한 세액공제 건의

I. 특소세등의 납부근거 및 현황

(1) 납세의무자와 납세부담자의 불일치

재화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본적으로 상품이 실수요자에게 완전하게 인도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행정의 편의상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납세의무가 지워지는데, 석유정제/판매업과 관련된 납세의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제2조 1항)

: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특별소비세법(제3조 2호)

: 제1조 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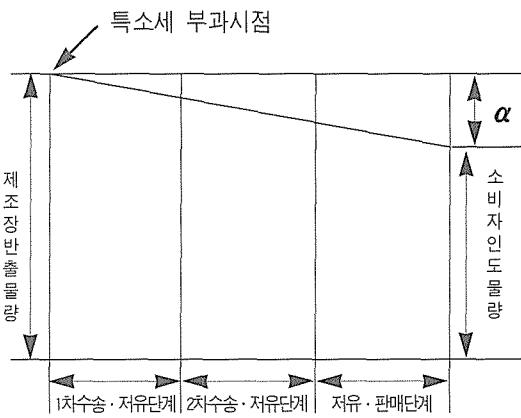
○ 교육세법(제3조 2호)

: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2) 현행 조세법령의 한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과세물품에 대해 공급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제도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되나, 휘발유와 같이 물리적으로 일정한 형태가 없는 석유류 제품에 추가적인 보완장치도 없이 공급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의 경우 일반적인 유형의 재화와 달리 수송/저유/판매중 자연휘발분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의 물량과 최종소비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의 물량에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옆의 그림에서와 같이 특소세/교육세는 감모분(α)만큼 정유사로부터 과다징수되는 결과를 초래 하여 공급자(정유사)에게 대납의무 및 초과납부등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휘발유의 단계별 세금부과 현황



2. 일본의 휘발유 자연감모분 공제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57년 이후부터 휘발유세법을 제정하여 감모분의 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1.35%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세액이 53,800 ₩/Kℓ일 경우 1.35%인 726 ₩/Kℓ 이 공장 출고시 세액 공제되며, 이중 원매회사는 506 ₩/Kℓ (69.7%), 주유소는 220 ₩/Kℓ (30.3%)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율은 한국의 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에 해당하는 석유연맹과 전석련의 합의하에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휘발유세법 제8조(과세표준)

휘발유의 과세표준은 휘발유가 정유공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휘발유 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휘발유의 수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저장 및 수송과정에서 감소하는 휘발유의 수량을 법령으로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제한 수량에만 과세한다.

○ 휘발유세법 시행령 제2조(차감공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휘발유의 제조장에서 옮겨지고 또는 보세지역에서 인수한 수량의 100분의 1.35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한다.

3. 건의내용

최종소비자에게 인도/사용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정책의 기본취지를 감안할 때 수송저유증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감모분에 부당하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환급/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보완/개정 등을 통한 조속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드립니다.

교통세, 특별소비세 신고 · 납부기한 연장 건의

I. 신고 · 납부기한 연장 건의 이유

현행 유류에 대한 교통세, 특별소비세는 석유제품의 최종소비자를 그 세금의 부담자로 함으로써, 정유회사는 단지 조세징수의 편의에 따라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세금의 징수 · 납부에 있어서 여하한 듅실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정유회사가 생산, 반출한 후 판매되어 실제로 대금이 회수되는 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징수함으로써 최종소비자가 판매가격과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납부기한을 물품반출월의 익월 말일로 규정함으로써 반출 이후 평균 45일의 기간내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유업계의 현실로 보아 전국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석유제품의 공급을 위하여 제조장의 수송 · 저유시설의 운영 및 주요 거래선인 중소기업체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신용공여 등으로 반출일로부터 45일을 훨씬 초과하여 판매대금이 회수(약 75 일 소요)되는 실정이므로 정유회사가 일정기간 세금을 선납하게 되며, 당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막대한 자금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더욱이 교육세 부과 및 세액의 거듭된 인상으로 인해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업계의 자금운용에 심한 압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건의내용

이와 같이 교통세, 특별소비세 신고 · 납부와 관련된 정유업계의 자금부담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정유업계의 경영을 압박하는 사항이므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신고 · 납부기한은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세법 제 7조 제 1항, 제 8조 제 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 9조 제 1항, 제 10조 제 1항의 신고 · 납부기한을 현행 “제조장에서 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물품을 반출한 달의 익익월 말일까지”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